

■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신청서류 작성 예시

1. 신청 시 제출서류

구분	온라인 신청 시	오프라인 신청 시
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	X	○
②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	X	○
③ 서약서 등 4종	X	○
③-1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(사업주 자필서명 필요)	○	○
③-2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X	○
③-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	X	○
③-4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공단↔사업주)	X	○
④ 견적서(보조신청금액 산출내역)	○	○
⑤ 제품 카탈로그(상품설명서, 사양서 등)	○	○
⑥ 지원품목 설치 대상 설비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(현장 사진 등)	○	○
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(특고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사업장용))	○	○
⑧ 기타서류 (해당 시 제출)	○	○
⑧-1 건설업등록증 사본 *해당품목 : 채광장 안전덮개, 엘리베이터 추락방지에방설비 등	○	○
⑧-2 건설기계(자동차)등록증 사본 (해당 시) *해당품목 : 굴착기·로더 안전장치, 화물차 안전장치 등	○	○
⑧-3 (공사) 공급업체, 환경전문 공사업,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사본 *해당품목 : 국소배기장치 설치공사 등	○	○

※ 온라인 신청 시 **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** 참고

[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 > “온라인 신청 매뉴얼 게시 알림(고위험개선)”]

2. 제출서류 작성 예시

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(온라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)

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[별지 제1호서식]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금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한
신청인	성명	김안전 → 사업자 정보 기재		871209-1 → 생년월일 + 성별
	자택주소	(214 - 17)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		
	자택전화	032-000-0000	이동전화	010-000-0000
신청업체 개요	신청업체명	(주) OO산업		사업장관리번호 123-00-00000-0
	사업자등록번호	123-00-00000-0		사업개시번호 0000000000
	대표자	김안전		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작성
	근로자수	00 명		회사전화번호 052-000-0000
	공사금액 (건설업만 기재)	원		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(건설업만 기재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 해당
	업종	건설기계관리사업		FAX 번호 052-000-0000
	소재지	(444 - 29) 울산광역시 중구 증가로 400		
	신청설비 설치 소재지	(-) 사업장 소재지와 다를 시 작성(설치현장)		
신청금액	총소요금액	2,000 천원 → 부가세를 제외한 신청설비 소요금액의 합계		보조신청금액 1,400 천원 → 총소요금액 X 0.7
	자체 부담금액	600 천원 → 총소요금액 - 보조신청금액		용자신청금액 천원
용자희망 금융기관	은행명	은행(중앙회)		지점
	소재지	(-) (전화번호 :)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58조제5항 및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」제9조, 제21조, 제28조의2, 제28조의6 또는 제28조의10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.

2023 년 0 월 0 일

신청인 김안전 (서명 또는 인)
김안전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

②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(온라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)

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[별지 제2호서식]

(1쪽)

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

■ 제조·서비스업(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포함)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 설비명	모델/규격 (차대번호) 건적업체	수량 단가	소요 금액	자금지원 신청금액			자체 부담금	투자완료 예정일
				계	보조금	용자금		
계	-	-		1,400	1,400	-	600	-
고소작업대	ABC-123 (A0000000B)	1	2,000	1,400	1,400	-	600	2023.0.00.
	OO기업	2,000						

→ 투자 설비명 : 지원을 신청하는 설비명 기재

→ 투자완료 예정일 : 설비를 설치 완료 한 후, 공단 직원이 설치된 장비를 확인(투자완료 확인) 가능한 날짜 기재

주1) "클린사업장 조성사업"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술지원(점검.감독)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(예상금액)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
주2) 투자설비가 "유해.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"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을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

■ 첨부서류

서 류 명	클린사업장 조성사업 (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)		추락방지용 안전시설	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	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
	온라인 (전산)	오프라인 (직접)			
① 견적서(원본) -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: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	○	○	○	○	○
② 상품설명서(카다록)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- 건설업 :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-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: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	○	○	○	○	○
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-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명장 등 -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(정부공인가격기준)	○	○	×	○	○
④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	×	×	×	×	○
⑤ 대출예정확인서	×	×	×	×	○
⑥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※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·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	×	×	×	○	×
⑦ 설치장소 보유 서류(자가 : 등기부 등본, 임차 : 임대차 계약서)	×	×	×	○	×
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	○	○	○	○
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	○	×	×	○
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 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(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)	×	×	○	×	×

주)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

㉓ 서약서 등 4중(온라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)

㉓-1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(사업주 자필서명 필요)

[별지 제5호서식]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(제16조제2항 및 제39조 관련)

- 제조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(),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(✓)
- 우리 공단의 "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"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보조금 지급신청(사업주-공단) →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(공단) → 시설투자(사업주-공급업체) → 이행보증보험 증권, 전체 설계·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(사업주-공단) → 투자완료확인(공단) → 보조금 지급(공단-사업주) → 사후 기술지도(공단)
 -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"보조금 지급신청서" 지원발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계를 조사하여 최저·최저 가계를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"투자완료 확인요청서"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(1개월 1회 연장 가능)을 하지 않은 경우,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설계도면도 완납중일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 - 보조금 지급대상 항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(구내사, 안전조치등을 들)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확인자 서명 **김안전**
-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한 광역본부장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,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-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준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전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(고정 구조물,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설비 제외)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견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.
 -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(기타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5년)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주등록번호 ② 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한 광역본부장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- 연결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.
- 확인자 서명 **김안전**
- "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"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한 광역본부장에게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임의의 변경, 증대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-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,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,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,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공의 장·폐기 등 불안전(불가정)을 보증 보증금(환수)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(특히 국제항공정착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(시행규칙 별표 3, 4 포함)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)
 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, 제재부과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 관계법령에 의해 행사처분 될 수 있으며 유야무야 처리됩니다.
 - 가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% 제재부과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
 - 세입 또는 과산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
 - 보조금을 지급받기 후 임의의 설비를 임의의 장소에 설치하거나,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,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% 제재부과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 - 보조금 신청서에 허위·변조된 목적과 맞지 않는 사실 기재된 경우 (지급받은 금액의 2% 제재부과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 - 보조금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사실 또는 장·폐기 관련 사실만 기재된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% 제재부과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 -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 해당 보조금 또는 장·폐기 관련 사실에 관하여 관공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
 -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
 -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사실확인에서 불합리한 경우
- 확인자 서명 **김안전**

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2년 0월 0일

확인자 (대표자) **김안전** (21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제4용종)))

㉓-2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☞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보조금 지급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, 보조금 결정통보, 보조금 지급, 지원(결정)취소 및 환수 등 용자금·보조금 규정 상 사업추진, 사업성립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 - ▷ 개인 식별 정보 : 성명, 생년월일 및 성별, 자택주소, 휴대전화번호, 자택전화번호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- ▷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: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
 - ▷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: 용자금·보조금 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(10년) 내 보관하고 보유 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

☞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주(동의자)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2022년 0월 0일

- 사업장명 : **OO산업**
- 신청인·동의자(사업주) : **김안전 김안전**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㉓-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
[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]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- 목적
-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"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"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 -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제화·관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 활용
-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- (이력정보)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
 - (과세정보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제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"매출액, 개업일, 휴업기간, 폐업일"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"수출액"에 관한
 - (인증정보) 기업의 인증·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 유효기간 등
-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간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서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간
- 동의 효력기간
-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,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
 -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
 - 동의철회 또는 제정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 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월부터 참여 이후 10년간
 -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* 본 동의서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헌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서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2년 0월 0일

기업명 **OO산업**
대표자 **김안전** **김안전**

*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㉓-4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공단↔사업주)

[서식 1](양면)

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(공단담당자-사업주)

[서식]

[서식]

1. 공

2. 통

3. 통

4. 통

5. 통

6. 통

7. 통

8. 통

9. 통

10. 통

11. 통

12. 통

13. 통

14. 통

15. 통

16. 통

17. 통

18. 통

19. 통

20. 통

21. 통

22. 통

23. 통

24. 통

25. 통

26. 통

27. 통

28. 통

29. 통

30. 통

31. 통

32. 통

33. 통

34. 통

35. 통

36. 통

37. 통

38. 통

39. 통

40. 통

41. 통

42. 통

43. 통

44. 통

45. 통

46. 통

47. 통

48. 통

49. 통

50. 통

51. 통

52. 통

53. 통

54. 통

55. 통

56. 통

57. 통

58. 통

59. 통

60. 통

61. 통

62. 통

63. 통

64. 통

65. 통

66. 통

67. 통

68. 통

69. 통

70. 통

71. 통

72. 통

73. 통

74. 통

75. 통

76. 통

77. 통

78. 통

79. 통

80. 통

81. 통

82. 통

83. 통

84. 통

85. 통

86. 통

87. 통

88. 통

89. 통

90. 통

91. 통

92. 통

93. 통

94. 통

95. 통

96. 통

97. 통

98. 통

99. 통

100. 통

101. 통

102. 통

103. 통

104. 통

105. 통

106. 통

107. 통

108. 통

109. 통

110. 통

111. 통

112. 통

113. 통

114. 통

115. 통

116. 통

117. 통

118. 통

119. 통

120. 통

121. 통

122. 통

123. 통

124. 통

125. 통

126. 통

127. 통

128. 통

129. 통

130. 통

131. 통

132. 통

133. 통

134. 통

135. 통

136. 통

137. 통

138. 통

139. 통

140. 통

141. 통

142. 통

143. 통

144. 통

145. 통

146. 통

147. 통

148. 통

149. 통

150. 통

151. 통

152. 통

153. 통

154. 통

155. 통

156. 통

157. 통

158. 통

159. 통

160. 통

161. 통

162. 통

163. 통

164. 통

165. 통

166. 통

167. 통

168. 통

169. 통

170. 통

171. 통

172. 통

173. 통

174. 통

175. 통

176. 통

177. 통

178. 통

179. 통

180. 통

181. 통

182. 통

183. 통

184. 통

185. 통

186. 통

187. 통

188. 통

189. 통

190. 통

191. 통

192. 통

193. 통

194. 통

195. 통

196. 통

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
(특고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사업장용))

→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co.kr)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
출력일시:2022.00.00 00:00
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발급번호		발급일시	2022-00-00	사업장관리번호	12300000000
구분	국민연금	건강보험	산재보험	고용보험	
사업자등록번호	123-00-00000	123-00-00000	123-00-00000	123-00-00000	
사업장 명칭	(주)OO산업	(주)OO산업	(주)OO산업	(주)OO산업	

■ 가입 내역(발급일자 현재기준)

연번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	성명	자격취득일			
			국민연금	건강보험	산재보험	고용보험
1	000000-1*****	김OO		2022.01.01	2022.01.01	2022.01.01
2	000000-1*****	이OO		2017.12.01	2017.12.01	2017.12.01
3	000000-1*****	한OO		2022.01.01	2022.01.01	2022.01.01
4	000000-1*****	서OO		2022.01.01	2022.01.01	2022.01.01
5	000000-1*****	김OO		2017.12.01	2017.12.01	2017.12.01

⑧ 기타 증빙사진

→ 제출을 요하는 설비에 대하여 추가증빙 제출

(양쪽)

건설업등록증

1. 업종 및 주력분야 : (주력분야 :)

2. 등록번호 :

3. 상호 : **OO산업**

4. 대표자 : **김안전**

5. 주된 영업소 소재지 :

6. 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 :

7. 국적(소속 국가명) :

8. 등록일자 :

원본대조필 김안전인

위 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210mm×297mm[복사지(150g/㎡)]

(앞쪽)

건설기계

등록증
 검사증

발급번호: 최초등록일: 제작년도:

건설기계의 표시			
건설기계명		등록번호	
형식		규격	
원동기 및 형식		차대일련번호	
등록사항	사용본거지(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, 영업용은 대여사업자의 사무소소재지)		
소유자의 표시			
성명(법인명)	OO산업	주민(사업자, 외국인)등록번호	123-00-00000
주소	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		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**국인**

1. 주요 제원			
형식승인번호 :			
길이	mm	너비	mm
높이	mm	총중량	kg
주행방식		경리율	FS/RPM
기동수		기동	연료종류
2. 저당권 등록 사실			
구분(설계 또는 말소)		일자	
* 2. 위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
8. 작업장치	
* 기동변 작업장치 표시	
원본대조필 김안전인	
최고속도(90km/h) 제한장치	설치 ()
대형건설기계 표시	설치 ()
*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,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하여야 합니다.	